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23]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의견서

November 17, 2021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12723]에 대해 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¹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BSA는 정부와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연합체로, 데이터 기반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지지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강력한 소비자 권리를 제공하는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법률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부들과 협력해오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BSA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하며, 강력한 데이터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².

BSA 회원사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ID 관리 서비스, 보안 솔루션 및 협업 소프트웨어 등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민감한 정보 중 일부를 BSA 회원사들에게 맡기고, 회원사들은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12723]에 대한 당사의 의견은 올해 2월 동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되었을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으며, 지난 의견서는 상호 운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방식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면,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도적인 국제적 접근 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¹ BSA | The Software Alliance (www.bsa.org)는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변하는 BSA입니다.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현대 생활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총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BSA는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활동을 선도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는 공공 정책을 지지합니다.

BSA's members include: Adobe,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AVEVA, Bentley Systems, Box, Cadence, Cisco, CNC/Mastercam, DocuSign,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Okta, Oracle, PTC, Salesforce, ServiceNow, Shopify,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itecore, Slack, Splunk, Synopsys,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Unity, Workday, Zendesk, and Zoom.

² See BSA Global Privacy Best Practices at: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A4_2018_BSA_Global_Privacy_Best_Practices.pdf.

In Korean at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A4_2018_BSA_Global_Privacy_Best_Practices_ko.pdf.

BSA 가 수정을 권고드리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
- 정보주체에 대한 주기적 통지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개인정보 이동성에 대한 요구사항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에 대한 요구조건
- 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 권한
- 최대 과징금에 대한 검토

권고사항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

BSA 는 본 개정안 제 26 조가 개인정보처리자 (“위탁자”)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아 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수탁자”의 개념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환영하는 동시에, 법안에 제시된 몇 가지 실질적인 의무사항들이 아직까지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어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목표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을 전달합니다.

정의. 먼저 위탁자와 수탁자, 두 개의 다른 역할을 개정안을 통해 정의하는 접근방식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이유를 결정하는 회사(위탁자)와 다른 회사를 대신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수탁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분명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의 선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반영하여 각각의 다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수탁자에게 소비자와 교류하게 하는 등 서로 다른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무. BSA 는 아웃소싱(수탁자)에 부과되는 실질적인 의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수탁자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종종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비자 대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위험이 있으며,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³ 및 싱가포르의 PDPA(Personal Data Protection Act)⁴ 등 전 세계의 다른 주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취하는 접근법과 모순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대면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데이터의 사용 방법과 사용 이유를 결정하는 회사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로, 개별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주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 소비자 대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PR 은 소비자 권리 요청을 준수할 의무와 정보 주체에게 처리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개인정보 위탁자에게 부여합니다. 개인정보 수탁자에게는 이에 따른 의무를

³ Article 28, GDPR, <https://gdpr-info.eu/art-28-gdpr/>

⁴ PDPA <https://sso.agc.gov.sg/Act/PDPA2012>

부과하지 않으며, 위탁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수탁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될 때 개인정보가 계속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법안에 내재된 국제법과 대조되는 접근 방식은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아래 두 의무사항들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동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의무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 적절히 부과되어야 하는 소비자 대면 의무 중 하나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자와 교류하며, 소비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에 대한 동의를 위탁자가 요청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위탁자가 이미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위탁자를 대신해 정보를 처리하는 많은 수탁자들이 추가로 동의 요청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 26 조 제 8 항은 정확히 수탁자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알지 못하고 입증할 수 없는 개인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중대한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위탁자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소비자 권리 요청에 대한 응답.** 개인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요청에 대응하려면 요청을 하는 소비자의 신원을 입증해야 하고,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교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기와 이유를 결정하는 위탁자가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GDPR 과 같은 법은 위탁자가 소비자 권리 요청에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탁자에게는 해당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탁자는 증거보존의 사유가 있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와 같이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위탁자가 결정해야 하고, 수탁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특성이나 그러한 처리가 수행되는 목적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계약상 저장하거나 위탁자 용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처리 활동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한정된 접근 방식을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수탁자에 의해 처리될 때에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수탁자의 의무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의 수탁자만의 고유 역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문서화된 지침에만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하고, 위탁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수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안 및 조직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 적절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SA 는 수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소비자 대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제 26 조제 8 항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시 정보 주체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제 22 조, 제 22 조의 2)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시 정보주체 통지 의무(제 27 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동의를 받을 의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제 28 조의 8, 제 28 조의 9);
- 개인정보의 유출 시 개인정보 주체 통지 의무 (제 34 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이에 따라야할 의무 (제 35 조의 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야할 의무: 삭제 요청에 따른 의무(제 36 조); 처리 정지 요청에 따른 의무 (제 37 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청에 따른 의무 (제 37 조의 2)

따라서,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들을 고려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첫째로, 제 26 조제 8 항을 수정하시어 “수탁자”가 제 15 조부터 제 18 조, 제 21 조, 제 22 조 2, 제 27 조, 제 28 조 2, 제 28 조 9, 제 34 조, 제 35 조 2, 제 36 조, 제 37 조 2 항에 따른 소비자 대면 의무를 따르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둘째로, 제 26 조를 개정하여 수탁자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개정을 통해 수탁자가 특정 의무를 가진 위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 26 조제 8 항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 64 조 및 70-75 조의 위약금 및 구제 조항을 개정하여 고의로 실질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수탁자에 한에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벌칙 조항으로 인해 수탁자에게 소비자 대면 의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는 중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경우 과징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탁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주체와 직접 교류할 수도 없습니다. 제 26 조 8 항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면, 최소한 제 64 조 및 제 70 조 75 항의 위약금 및 구제조항은 관련 실질적인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수탁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주기적 통지

제 20 조의 2 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용 명세,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가능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SA 는 통지 내용,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에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개인정보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기적인 통지를 제공하게 될 시, 통지의 목적인 보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정보주체에게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중요한 변경, 수집 중인 새로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또는 기존 사용 보고서의 업데이트 시에만 정보주체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통보를 요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BSA는 개정 제안된 제 28 조의 8, 제 1 항 내 여러 개인정보 전송 메커니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자가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메커니즘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BSA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개정안 내 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아래 3 가지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첫째로**, BSA는 제 28 조의 8, 제 1 항 1 호 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별도의 동의” 요건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동시에 소비자에게 훨씬 더 많은 양의 동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BSA는 법안의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로 국외 이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로**, 기업이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긴 정보 목록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제 28 조의 8, 제 2 항의 요건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관할 개인정보의 내역"뿐만 아니라 "국가, 이전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및 보유기간", "전송 방법 및 전송 거절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범적 통지 요건은 정보주체가 정보의 효용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데이터 전송 방법, 전송될 개인정보의 사용 기간 및 보유 기간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의미 있게 개선하지 않는 정보가 소비자에게 범람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각 수신자에게 특정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잠재적인 중단 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하위 프로세서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새로운 하위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회사의 업무 능력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상기 요건이 유지되어야 할 경우, 이전된 개인 정보의 범주, 목적, 수취인 국가 범주, 데이터 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 저장 또는 보유 기준 또는 기간으로 제한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개정 방향은 GDPR의 요건과도 부합함을 알려 드립니다.

- **셋째로**, BSA는 제 28 조의 8, 제 1 항 내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을 인정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인 전송 메커니즘에는 기업 내 바인딩 규칙, 국제적 신뢰 마크, 타 국가 인증 및 계약 약정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전 방식들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APEC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 유럽연합(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외이전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 28 조의 8, 제 1 항 제 4 호가 제 32 조의 2 에 따른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개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하는 표준을 가진 국제 신뢰 마크 및 기타 지역/국내

인증을 인정하면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 이동성에 대한 요구사항

제안된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 다른 개인정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제공합니다. 제 35 조의 2 에 따라 새로 생긴 정보주체의 권한은 GDPR 제 20 조 및 싱가포르 PDPA 제 26F-J 조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과 유사합니다. 해당 조항 자체는 개인정보 위탁자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개인정보 관리기관 또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 35 조의 2 에 따른 의무를 제 26 조 제 8 항의 규정에 포함시킬 경우,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전송권에 관한 이동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의 GDPR 과 싱가포르의 PDPA 가 개인정보 위탁자에게만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실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개인이 수탁자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탁자는 비즈니스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교류하지 않으므로 이 권리를 행사하려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액세스하거나 분석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그러한 요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정보 주체로서 인증할 수 없는 개인에게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안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SA 는 제 35 조의 2 에 따른 의무에서 수탁자를 제외해 주시기를 반복 요청드립니다.

개정안 제 35 조의 2 는 전달 기관이 개인정보 수신자가 제 35 조의 2, 제 1 항에 요약된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제 3 항의 해당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정보주체 주체 또는 이전 주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신자가 이러한 해당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제 35 조의 3 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및 역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 전문 기관"이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인지, 그러한 기관이 대상이 되는 데이터 보호 의무 및 "개인 정보 관리 전문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합니다. BSA 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와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사용자 중심 접근방식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기반해 탄력적으로 시행되어 조직에 대한 상충되는 법적 의무를 최소화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에 대한 요구조건

BSA 는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조항에 관련하여 글로벌 모범 사례들과 일치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구조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BSA 가 지지하는 요구조건들은 개인정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개인정보 주체가 심각한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유출 시 통지에 대한 정확한 요구조건을 설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통지 및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 시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접근, 도난 되어 신분 도용이나 금융 사기와 같은 개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 위험을 야기할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에게 **부당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제 34 조(1)를 개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 권한

BSA 는 본 개정안에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메커니즘에 대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 45 조 제 2 항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조정 과정이 적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위협적이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45 조제 1 항 및 제 45 조제 3 항의 현행 규정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 및 분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BSA 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삭제해주시길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대 과징금에 대한 검토

BSA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적시한 제 64 조의 2(3)항의 내용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해당 조항은 침해 등에 따른 과징금 수준을 결정할 때, 정보 주체에 대한 피해 정도, 데이터 침해의 특성, 조직이 시행하는 복구 및 관리 조치와 같은 완화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BSA 는 과징금은 정보주체에 야기된 피해에 비례해야 하며, 악화 또는 완화 요인의 유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64 조의 2 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시어 제 6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이 각각의 사건에서 발행되는 피해와 이러한 경감 상황에 비추어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특히, 개정안은 GDPR 과 유사한 언어를 채택할 수 있는데, GDPR 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경우 "각 개별 사례마다"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완화 또는 악화 요인들을 고려하시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BSA 는 개정안의 "연 매출액의 3%"라는 최대 과징금 수준은 정보주체에 대한 위반 및 피해의 정도와 연계시킬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매출에 기초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한국 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과징금이 법령상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비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BSA 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들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BSA 는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혁신의 진화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재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국회와 한국 정부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보호 정책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의 제안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근

BSA 코리아대표



BSA | THE SOFTWARE ALLIANCE